

「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장미경 의원 외 14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(안 제1조~제4조)
- 로봇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로봇산업 육성사업 실시 및 사무의 위탁과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(안 제7조~제9조)
- 로봇기업 우대지원에 대한 사항(안 제10조)
- 준용기준,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한 사항(안 제11조~제13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 제3조,
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,
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42조
- 부서검토 : 신산업정책과, 기업투자과 의견제출(붙임)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」에 의거하여 로봇산업 기본계획 수립, 육성 사업 시행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시에서도 (주)LG전자, (주)인탑스 등 49개의 로봇관련 업체가 입주해 있는 만큼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써 로봇산업을 장기적·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,
- 또한,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로봇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됨.